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 확대 등〉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81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추가(안 제1조)	2
2.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표기 규정(안 제2조, 제22조 및 27조제1항)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차지호의원 등 19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6.

다. 회부연월일 : 2024. 8.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의 수립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인 ‘KAIST’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표기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7조).

Ⅲ. 검토의견

1.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추가(안 제 1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지 <u>원하며,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u> <u>하기</u> ----- -----.

나. 검토의견

국가의 미래 전략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도출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미래 전략 연구를 강조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과학기술원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운영을 통하여 국가의 미래 전략 연구에 기여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국회미래연구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태재미래전략연구원, KDB 미래전략연구소 등이 국가의 미래 전략 연구에 기여하고 있음.

<국가 미래 전략 연구기관>

연 번	구 분	주요 연구 내용
1	국회미래연구원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회 연구기관
2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미래전략 수립 및 정책기획 교육과 국내외 정책 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폭넓은 정보 교류 및 심층 연구하는 미래전략 교육·연구기관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국가전략과 미래비전 제시를 목표로 급변하는 세계질서에서 대한민국의 복합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정책 중심의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진행하는 국가 정책 싱크탱크
4	KDB 미래전략연구소	경제·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보고서·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
5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인류 공영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내외 역량있는 연구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솔루션을 제안하는 연구기관

자료 : 국가전략정보포털

다만, 한국과학기술원은 설립 이후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중·장기 연구개발 기능을 주로 수행 중인데,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의 미래 전략 연구를 명시할 정도로 이를 주요 기능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가 미래 전략 연구가 한국과학기술원의 본질적인 역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2.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표기 규정 및 동일명칭 사용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2조, 제22조 및 27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표기를 ‘KAIST’로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동일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법인) (생략)	제2조(법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u>② 한국과학기술원은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한다.</u>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u>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 ----- <u>한국과학기술원 또는 KAIST라는</u> ----- --.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u>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u>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 ① ----- ----- <u>한국과학기술원 또는 KAIST</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카이스트’ 혹은 ‘KAIST’로도 널리 알려진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이 명칭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할 필요가 있고,²⁾ 영문 명칭이 혼용되고 있는 다른 연구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다라도 영문 명칭을 정관으로 정하는 사례는 있으나, 근거 법률에 이를 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필요하다면 다른 연구기관의 사례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영문 명칭을 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영문 명칭 규정 사례>

기관명	기관설치근거	영문명	영문명 명시 규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정관 제2초(명칭)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2조의 2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2조의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정관 제2조(명칭)

2)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예규 제3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회의 법률안 입안·접수 및 심사와 의안의 정리에 필요한 용어와 법문 표현 등에 관하여 표준화된 우리말과 한글 맞춤법에 따른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입법 업무의 통일성·체계성·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친화적 입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률안의 입안·접수·심사와 의안의 정리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법률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기본 원칙) ①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한다.

기관명	기관설치근거	영문명	영문명 명시 규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정관 제2조(명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정관 제2조(명칭)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지침(부서 및 직위 영문 명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정관 제2조(명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정관 제2조(명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관 제32조의2(부설기관) 제1항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관 제32조의2(부설기관) 제1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정관 제2조(명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정관 제2조(명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정관 제2조(명칭)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정관 제2조(명칭)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2조의 2	World Institute of Kimchi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31조의 2(부설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정관 제2조(명칭)

기관명	기관설치근거	영문명	영문명 명시 규정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약칭 KIMM)	정관 제2조(명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KIER)	정관 제2조(명칭)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정관 제2조(명칭)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정관 제2조(명칭)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2조의 2	Korea Institute of Toxicology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2조의 2(부설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국원자력연구원 정관 제2조(명칭)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정관 제2조(명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정관 제2조(명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정관 제2조(명칭)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 의 처

02)6788-5227